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고사건 종결사유 신고자에게 통지 등〉

■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49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 신고사건 종결사유 신고자에게 통지 등	2

I. 제안경위

1.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1인
2. 제안일 : 2024. 7. 29.
3. 회부일 : 2024. 7.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면서 그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국민적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경우 그 사유서를 작성하고 그 요지를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하여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9조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경우 그 사유서를 작성하고 그 요지를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접수된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경우 그 사유서를 작성하고, 즉시 신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⑦ 관할 수사기관은 제6항에 따른 고발에 대한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⑧ -----제7항에----- ----- ----- ----- -----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⑨ (생략)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생략)

② 제5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

⑨ -----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항에-----

-----.

③ ~ ⑥ (현행과 같음)

라 고발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날 제61조의2(이의신청) 제59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 ----- 제61조의2(이의신청) 제59조제7항에----- ----- ----- ----- ----- ----- ----- ----- -----
---	---

□ 현행법상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음.¹⁾ 권익위는 접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며, 해당 조사기관은 해당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함. 다만,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음.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되,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²⁾

□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하는 신고사건의 경우, 현행법은 신고자에게 종결사실 및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동 법 시행령은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종결할 경우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종결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결사유 통지에 관한 규정은 없음.³⁾⁴⁾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이 제3항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 ~ ⑦ (생 략)

⑧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⑨ (생 략)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59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2.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이에 개정안은 권익위 종결사건에 대해 그 사유 및 종결사실을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접수된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즉, 사건진행에 대한 신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고자의 사건처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신고자가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 신고자는 신고에 어떠한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이 있는지 알기 어려운데 비하여, 통지를 받게 되면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다른 기관에 신고를 하는 등의 후속 절차를 밟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현재 시행령에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개정안은 통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지 않은바, 법률의 예측가능성·명확성 제고를 위해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② 법 제5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4) 다만, 권익위에 의하면, 동 규정은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실무적으로도 신고사건 종결 시 신고자에게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문서, 청렴포털 등으로 통지하고 있다고 함.

- 권익위도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이나, 현재 시행령에서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종결할 경우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종결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종결사실 통지 시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0